

## 징계 및 직위해제

### 1 징계

#### 가. 징계일반

##### 1) 관련 규정

가) 징계사유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)

- (1)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  - (가)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  - (나) 직무상의 의무(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  - (다)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- (2) 공무원(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)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.

나) 징계부가금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)

- (1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(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)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.
  - (가)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
  - (나)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(橫領), 배임(背任)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(流用)한 경우
    - ①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기금
    - ②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
    - ③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
    - ④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
    - ⑤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    - ⑥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
    - ⑦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